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3. 7. 18(목)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4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 제2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28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이경재 위원장

- 제28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모두 공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광주방송의 노고단 지상파 DMB 보조국 재허가조건 변경에 관한 건 (2013-29-071)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광주방송의 노고단 지상파 DMB 보조국 재허가조건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광주방송의 노고단 지상파 DMB 보조국 재허가조건 변경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방송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재허가 조건 중 노고단 방송보조국 구축 관련 내용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경요청 내용입니다. ㈜광주방송은 노고단 방송보조국에 대해 출력을 당초 1~2kW에서 90W로 변경을 하고 구축기한을 금년 6 월에서 '13년 12월까지 연장해 주도록 요청해 왔습니다. 출력 측면에서는 1~2kW의 시설구 축시 4억원 이상이 소요되나 지역 지상파DMB는 광고수입이 없어 투자비 부담이 과다하므 로 출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구축기한과 관련해서는 호남권 지상파DMB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주방송과 ㈜전주방송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광주방송은 대둔산 등 4 개소, ㈜전주방송은 노고단 등 2개소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만 ㈜전주방송 측이 노고 단 보조국 구축에 대해 최근까지 투자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동 시설을 ㈜광주방송이 구 축할 예정인데 장비발주 및 시설공사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구축기한을 연장해 달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의뢰한 전파분석 결과입니다. 방송 면적률 측면을 살펴봤을 때 ㈜광주방송의 기 구축된 DMB 방송망에 노고단 보조국을 90W 로 추가 구축할 경우 노고단 일대 5개 시·군의 방송면적률이 36.26%에서 63.35%로 확대되 고 1kW로 추가 구축 시에는 75.18%로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출력 변경에 따른 인근 지역의 방송면적률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파간섭여부입니다. 채널이 인접해 KBS 노고단 보조국과 안테나 각도가 상이하고 지리산의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전파혼신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허가조건 변경

(안)입니다. 건의안을 말씀드리면 노고단 지상파DMB 보조국을 '13년 12월까지 90W 출력으로 구축하여야 한다입니다. 이는 ㈜광주방송의 노고단 보조국을 90W로 구축할 경우 허가대상 권역의 방송면적률이 36.26%에서 63.35%로 확대되고, 인접되어 있으니 타 방송사와 전파혼선이 없는 점, '10년 11월 재허가 조건인 총 5개 지상파DMB 보조국 중 4개국을 이미구축 완료한 점, 광고시장 위축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 민영방송사의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출력 변경을 허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광주방송이 노고단 보조국 구축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발주 및 시설공사등을 위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구축시한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재허가조건 변경 내용을 통보하고 연말까지 노고단보조국 구축을 완료토록 하고 중앙전파관리소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소출력으로 전환할 때 생기는 혼신 문제는 충분히 검증한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렇게 되면 당초에 자기들이 제시했던 출력과 소출력으로 바꾸는 투자설비 비용 차이는 얼마나 나옵니까?

○ 임필교 지역방송팀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kW로 하면 4억원이 소요되는데 90W로 하게 되면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이 문제는 초점이 DMB 사업은 돈이 되지 아니하고 기본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자본작식이 심각하다, 또 한편으로 DMB 사업을 개시할 때 자기들이 약속했던 안테나 설비는 아직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상충(相衝)과 모순이 있었던 것이 이 문제의 원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답을 적절하게 찾아낸 것이지요. 소출력으로 안테나 설비비용을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버리지나 혼신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행정의 합리성, 민주성, 능률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조화된 처리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보일 때 해결의 원점을 합리적으로 들여다보고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KCC가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전주방송이 원래 노고단과 모악산을 하기로 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자기들끼리 어쨌든 그때 권역을 줬으니까 도 단위로 준 것이 아니고 전라남북도를 한 사업 자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방송과 ㈜전주방송이 협의 하에 모악산과 노고단은 ㈜전주방송이 하기로 했는데 장사가 안 되고 돈이 안 되니 ㈜전주방송이 지금 모르는 체하고 있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지상파DMB는 공적책무의 한 영역입니다. 이동 간에 있어서 지상파들을 볼 수 있게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민영방송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해 놓고 돈 안 되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다른 방송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징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적책무를 외면하고 그다음에 신의원칙에 위반하고 그러면서 야비한 경영을 하는 ㈜전주방송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이 ㈜전주방송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모든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영방송 상호간 협의에 의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연 얼마나 관여해서 할 수 있을지 여부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KBS와 MBC 등 다른 방송사에 있어서의 DMB 커버리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문석 상임위원

- 이 부분의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것이고, 예를 들어 강원민방은 그 강원도 넓은 지역에 사람은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거의 모든 부분들을 다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강원 쪽의 MBC들도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면서 강원도 쪽으로 찾아가는 국민들이나 강원도 도민들에게 지상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해서 ㈜전주방송이 보이는 이런 태도는 태도라고 표현하기 불편한 정도로 이것은 작태지요. 이러한 작태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된 수단들을 가지고 징치를 못 하면 이것은 진짜 방송통신위원회가 심각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부분에 대

해서 사적 영역에서의 계약이나 이 부분들은 공적책무를 회피한 행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방송사업을 사익 도모의 무슨 양말공장이나 연탄공장 운영처럼 생각하는 발상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방송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거의 고배당,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고배당을 한 것도 문제가 되었고, 최근에 일부의 주장에 의하면오너와 관련해 껍데기 회사에 50억원을 투자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 진위 내용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사 간에는 서로 지역에 따라 또 이런저런 것에 따라 협조하고 서로 이것은 네가 하고 이것은 내가 하고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보고와는 별개로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상임위원들께 보고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예단하지 말고 그때 결정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 임필교 지역방송팀장

-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권이 ㈜광주방송에 있기 때문에 노고단도 모악산도 ㈜광주방송이 구축하는 것이지만 ㈜전주방송과 협조를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방송이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전주방송한테 무엇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렇게 예단하지 말고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 원 안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은 더 조사하고 검토해서 다시 의논하기로 합시다.

○ 임필교 지역방송팀장

- 알겠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주파수에 관한 분석을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해서 준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일원이냐, 일부냐를 가지고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것입니

까? 그런 류의 구분이 필요 없이 SF Network에서는 방송면적률만 가지고 표현하기로 한 것입니까?

○ 임필교 지역방송팀장

- 아닙니다. 허가증이 나갈 때 50%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일원, 일부를 표시해서 나갈 것입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그것은 허가증에 나가고….

○ 임필교 지역방송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지금 정리된 것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것은 미래부에서 지침대로 같이 나가면 되겠지요?

○ 임필교 지역방송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광주방송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지역방송에 따라서는 이와 유사한 건들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 (2013-29-072)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간신문의 부수 확인 및 인증에 관한 기관을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경과사항은 제일 끝 부분 금년 7월 15일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협의 관련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신문의 부수 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한국ABC협회는 1989년 협회 설립 이후 1993년 최초 부수보고 및 실사, 1996년부터 공사(公査)보고서 발간 등 신문부수 인증을 수행해

온 경험을 통해 관련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동 협회는 「신문부수 공사규정」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인증을 실시하고, '09년 10월부터 외부인사 9 인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증업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등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사)한국ABC협회의 일간신문 및 잡지 관련 인증 자료를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정(안)입니다. 현재 국내 유일의 신문부수 인증단체로서 전문성을 갖춘 (사)한국ABC협회를 일간신문의 부수인증기관으로 지정하되, 다만 지정기간 중이라도 타 정부기관에서 (사)한국ABC협회의 부수인증 업무수행에 대해 부수조작 등문제점을 발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 올 경우 지정 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있다는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안을 만들어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게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마지막 표현을 향후 계획 바로 위에 '지정기간 중이라도 타 정부기관에서 (사)한국ABC협회의 부수인증 업무수행에 대해 부수조작 등 문제점을 발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할 경우'에 '경우 등'을 넣어서 다른 데서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동안 (사)한국ABC협회가 지난 20~30년 동안 보여 왔던 여러 가지 안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후에 심각한 문제가발생하면 지정해지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우 등 지정 해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의 지정 해지 판단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부처에서 신고할 경우에만 지정 해지를 할 수 있게 표현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사)한국ABC협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동안의 역사들을 묶어서 보면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넣어서 문구를 수정해서 정리하십시오.

○ 김충식 부위원장

- (사)한국ABC협회에 대해 지금 연혁에도 나와 있지만 (사)한국ABC협회 공사(公査) 내용이 완벽하거나 만능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89년에 설립해서 '93년에 무려 4년이 지나서 이것이 최초의 부수공사가 이루어진 것 자체도 국장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것이 신문업계가 황혼을 맞이해서 서로 그 부수를 밝힐 수 없다는 회사도 있고, 밝혀야 광고에 유리하다는 회사도 있고 그 암투가 3, 4년 동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막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조사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2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

나는 자기 신문사의 정확한 부수를 사장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가 부수 이야기겠지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한국ABC협회 자체의 부수 산정 내용이 약간 복마전 성격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 국장, 최근 국회에 무슨 진정(陳情)이 있었던 것 들어 봤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 김충식 부위원장

- 예.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지난번 국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제보인지 진정인지 그것 자체도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것까지를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지금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법적으로 유일하게 (사)한국ABC협회 자료밖에 인용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지만 (사)한국ABC협회 자료가 전능이거나 만능이 아니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전제로 해서 우리 평가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양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한 편 잘 아시다시피 기관 지정의 문제는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문제점이 파악될 경우에는 그때그때 할 수도 있거니와 또한 지정 취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방통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면 양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 어차피 지정하는 것과 해지하는 것은 방통위가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등'자를 집어넣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 결격사유가 있다면 지정을 해지할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문장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타 정부기관에서 통보할 경우 지정 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체인 우리의 개념이 빠졌기 때문에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양문석 위원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장을 '지정기간 중이라도 타 정부기관에서'

라는 표현을 빼고 '지정기관 중이라도 (사)한국ABC협회의 부수인증 업무수행에 대해 부수조작 등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지정 해지 등' 이렇게 바로 나가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하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의결됐습니다.

다.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 ㈜문화방송 (2013-29-073)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다>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기반총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총괄과장

- <1>번 의결주문입니다. ㈜문화방송이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 제재처분 과 관련하여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심청구 및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처분의 집 행을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방송법」제100조에 따라 명령한 제재조치 처분에 대 해 당사자인 ㈜문화방송이 집행정지를 신청한바, 그 처리방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것입 니다. <3>번 그간 경과 및 주요내용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화방송에 대해 「방 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주의'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분을 요청 해 왔습니다. 7월 11일입니다. 원심결정의 개요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2013년 4월 12일 자 방송에서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이벤트와 구단의 마케팅 활동에 대 해 보도하면서 특정업체 제품 7even입니다. 2013 프로야구 공식스폰서인 한국야쿠르트의 제 품인데 이것을 양손에 쥐고 있는 여성 관중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방송한바 있습니다. 이러 한 것은 「방송심의규정」제46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심위에서는 저희 방통위에 '주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 정|을 보면 제46조에서 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제재조치 처분을 7월 12일 내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문화방송은 '주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7월 16일 신청해 왔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유는 해당 프로그램 담당 기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재심청구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그에 앞서 원심결정대로 고지방송을 하면 회복할 수 없는 공신력의 손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면 방송법 제100조제4항에 의한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결정 전문을 방송하지 않으면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며, 재심 결정시까지 고지방송을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사유는 청구인이 원심결정대로 고지방송을 이행하면, 재심에서 원심 결정이 번복되더라도 손상된 공신력은 원상 회복이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방송법에서 원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한 재심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방송법에서 원심 결정에 대해 모두 인용한 선례 등을 고려할 때,청구인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번 참고사항입니다. 방송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지방송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19일까지 집행정지 수용여부를 결정ㆍ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재심청구기간 중에 고지방송을 보류하는 것은 집행정지 신청기간 동안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절차를 다시 우리가 의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총괄과장

- 맞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집행정지 기간에는 당연히 고지방송이 보류되는 것으로 지침을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총괄과장

-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집행정지 신청은 사실상 거의 자동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번 위원회에 소관 사무국에서 위임 처리할 수 있도록 방송심의 업무 처리지침을 고치는 방향으로 안건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위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라>에 앞서서 <보고안건>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정렬 기획총괄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기획총괄담당관

-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사 분담금 징수주체를 소관별로 명확히 구분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후 속조치로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방송사업자별 분담금 징수율 결정주체 세분화입니다. 지상파 및 종편·보도PP의 분담률 징수율은 방통위가 정하고, 종합유선·위성방송·IPTV 및 홈쇼핑 PP의 분담금 징수율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분담금 면제 소관 부처 명확화입니다. 분담금 면제 대상 사 업자인 위성방송과 IPTV의 소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이므로 면제주체를 현행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담금 납 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조항 신설입니다.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분담금 납부 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담금 과·오납금 환급 조항을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겠 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요건 변경입니다. 현재 '모든 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을 '방통위와 미래부 당연직 위원 중에서' 임명토록 변경하고, 기금 위탁관리 기관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 위탁기관의 담당 직원 임명절 차 개선입니다. 현행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동으로 임명하는 기 금 위탁기관의 담당 직원 임명절차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 의하여' 임명토록 변경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보고 이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 쳐 9월 초에 다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이 끝나면 저희 예상으로는 9월 하순에 공포되는 일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 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라.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3-39-074~076)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라>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이용자정책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KT와 ㈜LG 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 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가 '13년 1월 8일~3월 13일까지 그리고 '13년 4월 22일~5월 7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 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사배경 및 주요 경과입니다. 조사 배경은 방송통신위원회는 '13년 1월 8일~3월 13일과 '13년 4월 22일~5월 7일 기간 중 SKT, KT 및 LGU+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 을 인지하고 '13년 5월 8일부터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경과는 '13년 5월 8일~7월 15일까지 이통 3사 본사 및 유통망 현장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통 3사에 대해 시정조치 (안)을 송부해서 열흘 간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실조사 결과는 2개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년 1월 8일~3월 13일 신규모집 금지기 간에 해당한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이통 3사의 전체 가입건수 390만건 중에 24만 7,000건을 위법성 여부를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SKT 73.8%, KT가 73.1%, LGU+가 66% 순으로 이전 제재시 40%대보다도 현격히 높은 위반 율을 보였습니다. 아래 <표>는 세부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이통 3사 가 지급한 평균 보조금 수준은 41.7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43.6만원, SKT 42만원, LGU+가 38.1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 은 이통 3사 평균 53.1만원, 사업자별로는 KT 54.6만원, LGU+ 52.3만원, SKT 52.3만원 순이 었습니다. 그다음에 '13년 4월 22일~5월 7일까지 과열기간에 대한 조사사항입니다. 조사대 상은 이통 3사의 동 기간 중 전체 가입건수 100만건 중에 61만여 건을 대상으로 조사·분 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위반사항은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KT 55.6%, LGU+ 48.8%, SKT 48.5% 순입니다. 아래 박스는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아래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날짜는 조사기간 12일 중에 KT 8일, LGU+ 3일, SKT 2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밑에 박스 아래쪽을 보시면 이통 3사가 지급한 평균 보조금 수준은 30.3만원, 사업자별로는 KT 32.6만원, SKT 29.7만원, LGU+ 27.8만원 순이었습니다. 또한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은 이통 3사 평균 48.8만원, 사업자별로는 KT 49.5만원, SKT 48.8만원, LGU+ 47.2만원 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통 3사의 전산시스템 에 등록된 보조금 지급 내용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보조금 지급자료와의 불일치 정 도를 파악한 결과, 이통 3사 평균은 26.6%, 사업자별로는 LGU+ 30.8%, KT 29.7%, SKT 22% 순으로 불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 및 시정조치 제재(안)입니다. 관련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 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스 아래쪽을 보시면 제재(안)은 이통 3사가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 1항 [별표 4] 5. 마호 1)목 위반으로 동법 제52조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이용 자의 신규모집 금지 등 시정 조치와 동법 제53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피심인 의견은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오남석 국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피심인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 진술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피심인의 의견진술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SK텔레콤㈜ 측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심인 입장해 주십시오.

(SK텔레콤㈜ 피심인 입장)

SK텔레콤㈜에서 참석하신 이상헌 상무, 맞습니까?

○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 예, 맞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조우현 본부장, 맞습니까?

○ 조우현 SK텔레콤㈜ 영업본부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침해행위에 대한 SK텔레콤㈜ 측의 입장을 핵심사항 위주로 가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 이상헌입니다. 오늘 심결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이 과거에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여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SK 텔레콤㈜도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이용자 이익 침해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 금번 보조금 건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수준에 어떤 차이들이 발생함으로써 이용자 편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편익이 침해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 가입형태와 시기에 따라 단말기를 구입할 때 가격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말이 어려워서 이용자 침해지,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 수탈이고 선량한 시민 착취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마케팅본부나 SKT 경영진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 예,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간에 시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신 3사, 그중에서도 지배사업자인 SKT가 불법을 저질러서 제재를 받는 기간 중에 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운전면허취소 기간 중에 음주 운전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간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하지 만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기간에….

○ 김충식 부위원장

- 사업이라는 것은 본래 전쟁이고 피흘리는 투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문구의 이미지 선전하면서 광고하는 그런 큰 회사들이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또 어겼다고 경고받고 제재받는 기간에까지 다시 재범을 하면서 행정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조우현 본부장님, 어젯밤에 갤럭시S4 가장 싸게 판 것이 얼마입니까?

○ 조우현 SK텔레콤㈜ 영업본부장

- 제가 어제 휴가기간에 와서….

○ 양문석 상임위원

- 그제는….

○ 조우현 SK텔레콤㈜ 영업본부장

- 금주에 계속 휴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O 양문석 상임위원

- 휴가 가기 전날 갤럭시 S4는 가장 싸게 판 것이 얼마입니까?

○ 조우현 SK텔레콤㈜ 영업본부장

- SK텔레콤㈜의 갤럭시 S4는 20~25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O 양문석 상임위원

- 갤럭시 S4 얼마짜리입니까?

○ 조우현 SK텔레콤㈜ 영업본부장

- 갤럭시 S4 90만원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참 답답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도 세계일보에서 꺼질 줄 모르는 이통사 보조금 경쟁, 90만원대 갤럭시 S4 20만원대, 시장 과열 양상, 당국 엄벌 재차 경고해도 계속해서 영업본부 라인에서 90만원짜리를 20만원대에 팔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지 않습니까?

○ 조우현 SK텔레콤㈜ 영업본부장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고객 보조금이 20~25만원 정도 받는 수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갤럭시 S4가 얼마나 팔렸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보조금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까?

○ 조우현 SK텔레콤㈜ 영업본부장

- 죄송합니다. 60~65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상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뒤에 또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상헌 정책협력실장, 오늘 나와서 이야기들을 할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확답을 다시 한 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신규모집기간에도 그런 위반이 있었고 또 과열기간이라고 해서 과징금 이렇게 해서 제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받게 되면 또 과열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 주도사업자만 처벌하자, 이런 방안도 나오는데 사실 주도사업자와 주도사업자 아닌 사업자와 차이를 따지자면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효과를 거둬 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심결을 통해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예를 들어 신규모집, 어느회사 하나가 제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과열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

서 SKT의 경우에 그렇게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지금 SKT를 대표해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는 약속을 어기더라도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당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 당연히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의견을 드릴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재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조치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과열 주도사업자를 특히 엄벌하겠다고 하셨던 이유도 분명히 그런 상황들을자꾸만 만드는 것들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후에 그런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니까 3사 가운데 가장 1위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1위 사업자가 확실하게 선도해 나가면 전체적으로 탁한 분위기가 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그것을 꼭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저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SK텔레콤㈜의 작년도 영업보고서에서 뽑아보니까 마케팅비용이 전체적으로 쓴 것이 재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개별 회사가 영업을 하는데 마케팅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야 전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러나 보조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긍정적인 사인이 아닌가 하는데 금년에는 연초부터 이렇게 과열양상으로 치닫는 것으로 봐서는 금년 말에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 번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SKT 입장에서는 지금 서면으로 피력하신 의견에서도 보면 주도 사업자는 경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행동으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3개 사업자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차이가 미묘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디가 됐든지, KT가 됐든

SKT든 LG든 평가해 보면 결국 주도사업자로 불릴 수 있는 확률이 언제든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거기에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 예, 알겠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그리고 건의하신 사항 중에 조사대상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지요?

○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 아까도 잠깐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 과열이 왜 자꾸만 재발되는가, 그런 현상 중의 하나가 조사기간의 불확실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시작됐을 때, 시장이 과열됐을 때 어느 시점까지는 분명히 조사대상기간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된다는 부분이 사전에 예고가 된다면 사업자들이 상당히 주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법에 365일 주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설정해서 행정을 하라는 것입니까?

○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실제 시장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장이 과열되면 시장조사 시기는 정해질 수 있겠지만 며칠까지 시장조사 대상기간에 산입한다는 것이 원칙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시장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열흘 동안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한 달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상황에 따라….

○ 양문석 상임위원

- 이 상무! 되지도 않은 소리, 그만 하십시오.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영업정지가 떨어지느니 몇 백억의 과징금이 떨어지느니 하는데, 어젯밤에 기사 안 보셨습니까? 여기 본 부장 직접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 김대희 상임위원

- 대충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경찰관이 순찰을 어떻게 도는지 알려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피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저도 답변요지를 보면서 기간을 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달라는, 아까 조사할 때 미리 알려 달라, 우리 준비하고 피하겠다 그 런 이야기 같아서 저도 납득이 안 가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진실이지요?

○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 예. 저희가 원래 말씀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사전에 그 기간을 피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더 이상 위원들의 질문이 없으시면 SK텔레콤㈜ 측 피심인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SK텔레콤㈜ 피심인 퇴장)

○ 이경재 위원장

- 이어서 ㈜KT 측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십시오.

(㈜KT 피심인 입장)

㈜KT에서 참석하신 남규택 부사장, 맞습니까?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이석수 상무보, 맞습니까?

○ 이석수 ㈜케이티 상무보

- 예, 맞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KT 측의 입장을 진상 위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수 ㈜케이티 상무보

- KT 대외협력실의 이석수 상무입니다. 우선 본건에 대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피심인은 시정조치(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방통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피심인은 영업정지 이후 시장 과열 직전과 시장 안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피심인은 3사의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고 시장 과열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40일간 9만명의 가입자가 순감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며, 시장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불가

피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여 결과적으로 시장과열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 니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피심인이 위법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이 거의 없음을 감안하여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심인의 경우 영업정지기간부터 과열기간까지 MMP가 15만건 이상 순감하였고, 총 가입자수도 약 30만명이나 순감하였습니다. 특히 과열기간에는 3사 중 최대 의 MMP 순감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3사간 시장점유율은 2013년 1월~5월까지 유일하게 감소되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열기간에 대한 가중 제재시 1개 사업자만에 대한 영업정지는 그 타격이 심대함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사 에 대한 순차적 영업정지는 경쟁사 영업정지기간 동안 영업손실 회복의 기회가 부여되나 1 개 사업자만에 대한 영업정지시는 가입자 순감, 신규 가입자 모집기회 상실, 유통망 경쟁력 저하, 이용자 불편 초래, 기업 이미지 하락 등의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단 하루의 영업 정지라 할지라도 그 제재효과는 과징금 부과시와 비교하여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2년 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163일의 20일 영업정지 사업자간 차등 2일 이내에 비해 금번 조사대 상기간은 16일간 단기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도의 차이는 있으 나 동일하게 위법행위를 한 타 사업자에 대해 추가적 영업기회라는 반사적 이익을 제공하 게 됩니다. '13년 단기간 내에 두 차례에 걸친 영업정지는 중소유통망에 복구할 수 없을 정 도로 유통 영업력 손실이 초래됩니다. 피심인의 경우 2G 서비스 종료 지연에 따른 LTE 서 비스 출시 지연으로 지속적인 가입자 감소, LTE CA 서비스 난관 봉착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피심인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어 중 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 심인은 방통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스 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도사업자를 제재하는 경우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사업자에만 영업정지 부과시 제재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시어 금번 심결 시까지는 영 업정지의 미부과를 요청드립니다. 조만간 보조금이 법제화될 경우 보조금 과열 지급 이슈는 해소될 것이므로 금번 제재 시에는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KT의 전신이 한국통신 맞지요?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예, 맞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국민의 KT라고 광고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출발한 것이지요?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예, 맞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데 제재기간에, 그것도 가장 심각한 제재기간에 불법을 되풀이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저희도 나름대로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렇게 불법상황 속에서 또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도 가장 1등으로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국민의 KT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모멸이고 능욕 아닙니까?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사기간 중에 저희는 나름대로 상대방에 비해….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KT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것은 왜 불법은 제일 많이 저지르는 데도 순감(純減)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과연 마케팅의 무능인 것인지, 경영진 전체의 무능인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말씀드린 것... 제가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렇게 단호하게 답변만해서 될 일은 아니고 문제는 터졌으니까, 대법인의 대표로 나와서 답변하시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그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가장 큰 순 감이 났는데 불법은 가장 큰 것인가….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저희로서도 그 점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왜 그런지를 찾기 위해 채널별· 시기별 여러 가지 분석하고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석수 상무께 물어봅시다.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 이석수 ㈜케이티 상무보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지나가는 한 사람을 뒤에서 퍽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갑이 없으면 그 퍽치기는 봐 줘야

합니까? 정확하게 '예', '아니오'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퍽치기를 봐 줘야 합니까? 퍽치기는 죄가 없습니까?

○ 이석수 ㈜케이티 상무보

- 퍽치기와 같이 비교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O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퍽치기를 해서 사람은 쓰러졌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갑이 없어서 얻은 이익이 없으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집니까? 선처해 주어야 합니까? 이 사례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십시오.

○ 이석수 ㈜케이티 상무보

- 그런 경우에는 죄를 물어야 할 것 같고, 그것도 과정을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O 양문석 상임위원

- 퍽치기를 했는데도 그 과정의 사정을 봐야 한다고요?

○ 이석수 ㈜케이티 상무보

- 퍽치기는 위법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하지만….

O 양문석 상임위원

- 이용자 차별은요? 멀쩡하게 내 돈 주고 90만원 산 사람이 있고 18만원 주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만원은 내 돈 90만원에서 보조한 것입니다. 그것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나쁜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용자 차별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이해에 엄청나게 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마음씨 좋으시네요. 퍽치기를 해도 그과정도 보고 사정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16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조사 방법론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지요?

○ 이석수 ㈜케이티 상무보

- 그것은 아니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선처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선처의 영역과 16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문제는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이고, 16일에 대한 문제는 조사방법론에 대한 문제이고, 선처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인데 16일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선처해 달라, 이것이 인과관계가 맞습니까?

○ 이석수 ㈜케이티 상무보

- 저희가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방통위에서 주도사업자를 골라서 가중 처벌하겠다는 통보를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KT만 그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아닙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받으셨습니까?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면 방통위가 아주 우습게 보였습니까?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도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또 아까 이석수 상무 이야기하는데 선처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냐 하면 '어떤 처벌이라도 이번에 달게 받았다. 왜? 우리가 잘못했다. 왜냐하면 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 절대 그렇지 않겠다'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별로 이익도 생긴 것도 없는데 좀 봐 주십시오' 이런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자세가 틀렸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늘 어떤 제재가 내려지더라도 또위법할 것 아니냐, 그때는 정말 가만 두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제재를 받든 다음에 또 주도사업자가 될 용의가 있습니까?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약속했습니다.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때 주도사업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까?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약속했습니다.

O 양문석 상임위원

- 그 약속이 의미가 있습니까? 남 부사장님, 상대방에 비해 나름대로 열심히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셨다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끊겼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기간 때 우리 시장조사과에서 그리고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이 수없이 목요일, 금요일 전화를 했고 경고 줬지요?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KT 서유열, SKT 이형희, LGU+ 유필계 문자 보내고 전화했는데요.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기억하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유일하게 KT만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콜도 없고 문자 보내도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아니나 다를까 총 8일을 단독 선두로 내달았지요. 위반을 LGU+ 3번, SKT 2번 할 때 8일로 1등 했습니다. 참 쪽팔리는 일입니다. 상임위원 전화했는데 사업자가 전화도 안 받고 리콜도 안 해 주고 심지어 문자까지 보냈는데 답장도 못 받은 이 아픈 과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무엇을 나름대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여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경고, 국장 경고, 상임위원 경고 무시하는 것이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지금 말씀하신 문자와 전화를 받으신 분이 답장하지 않은 것은 저는 몰랐고, 그다음에 위원 님들로부터 이런 우려가 왔다는 것은 분명히 전달받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뒤로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4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7일 이후가 되면서 저희 실적이 그 전보다도 상 당히 심각하게 감소되어서 그 뒤로는 조금 그것을 만회하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시장조사….

○ 홍성규 상임위원

-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과장, 국장 경고는 3사가 다 받았는데 KT만 상임위원 경고를 못 받았

다는 것이지요?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문자는 받아서 저까지 전달이 됐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문자를 받았습니까?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제가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면 상임위원 경고까지 무시한 것입니까?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정도의 노력이면 그 기준에는 어느 정도 부합한다는 잘못된 판단을 했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따라 또 리액션이 일어나겠는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처럼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지고 약속해 주십시오.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보고서상 마케팅비를 보니까 KT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것이 결국 보조금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도 보게 될 텐데, KT가 말로는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서.... 이번 조사에서도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남규택 부사장님, KT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주도사업자의 처벌로 모집금지하는 것 만은 피해달라는 요청이시지요?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런데 주도사업자로 이미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결과는 저희가 수용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런데 그 결과를 언제 통보 받으셨습니까?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지지난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어떻게 됐다는 것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국장, 결과를 미리 통보해 줬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통보한바 없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런데 어떻게 주도사업자가 된 것을 알고 대책을 세운 것입니까?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아닙니다. 대책을 세운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어떻고 이런 것은 지지난 주 금요일에 알게 됐습니다.

○ 이석수 ㈜케이티 상무보

-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안)를 받았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최종적인 것은 아직 의결이 안 됐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의결할 텐데 처벌 내용을 미리 알고 감면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저희들이 당혹스러워서 그렇습니다.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그것은 아니고 저도 저희가 확정적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들어와서 알게 되었고, 그다음 에 지금 말씀 올리는 것은 혹시 그렇게 될 경우라도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정이 있으니 이것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최종적인 것은 영업정지 처벌을 내릴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안다는 것도 영업비밀도 중요하지만 우리 방통위의 결정도 미리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남규택 ㈜케이티 부사장

-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정이 됐다는 분위기는 이 자리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서 저희가 추론한 것이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아까 이석수 상무가 간청드린 것은 혹시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점을 감안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석수 상무보의 의견진술 내용에 영업정지 처분만은 말아달라는 의견이 이미 어저께 제가 읽어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결론을 이미 아시고 청원하는 것 같은 표현이 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방통위도 그렇고 해당 사도 그렇고 비밀의 영역은 지켜졌으 면 합니다. 위원들의 질문이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됩니다.

(㈜KT 피심인 퇴장)

㈜LG유플러스 측 관계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 피심인 입장)

참석자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에서 참석하신 강학주 상무, 맞습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 예, 맞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박상훈 상무, 맞습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예.

○ 이경재 위원장

-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LG유플러스 측의 입장을 핵심사 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귀 위원회로부터 단말기 보조 금과 관련된 시정조치를 받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사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심의 · 의결에 앞서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현재 이동전화사업은 포화된 시장 속에서 4G 네트워크 인 LTE가 본격 제공됨에 따라서 기존 3G와는 다른 양상으로 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 장 측면에서 보면 이동전화사업은 가입자가 인구를 초과함에 따라서 신규는 감소하고 MM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쟁 측면에서 보면 LTE 네트워크에 이어 곧바로 LTE-A가 경쟁적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모바일 VIP 허용, 망 내의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 사업자간 본원적 요소에 의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회사는 MMP 위주의 시 장에서 공평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보조금이 아닌 본원적 요소에 의한 경쟁을 진행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가입자 유치 시 기존 고객의 재가입인 기기변경과 MMP 등 가입 유형간 차별 없이 가급적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가입 자간 차별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도 혼탁과 과열을 유발하는 보조금 경쟁 주도는 최대한 회피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업그레 드, 망 내 무제한 요금제 등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서 본원적 요소에 의한 경쟁을 병 행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회사의 보조금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국내 LTE 시장 발전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시어 선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변화 된 시장 환경에서의 상시 과열 판단시 규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 립니다. 현재 담당 사무국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현행 MMP 기준은 시장 포화로 인해서 MMP로의 경쟁집중도 증가 및 LTE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하여 이를 3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7만원 기준 역시 고가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단말기 이용 장벽 제거 등을 위해 30만원대 이상으로 상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위반행위는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므로 지배적 사업 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책임부과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시 가중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LGU+에서 과거에 정도(正道)경영이라는 것을 표방한바 있지요?

○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은 내렸습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 아닙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 정도경영이 무슨 뜻이지요? 남이 불법을 해도 나는 꿋꿋하게 정도를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 김충식 부위워장

- 그런데 신규모집 금지기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는 것이 정정당당합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보조금 경쟁에 저희가 계속 적으로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 히 서비스 본원적 경쟁력보다 더 단기적으로는 보조금이라는 수단이 시장과 고객 측면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타 사업자가 술수나 암수(暗手)를 쓰더라도 LGU+는 LGU+답게 통화 품질과 서비스 경쟁으로 시장점유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강학주 상무의 이야기 중에도 자기 변론을 하러 나와서 방통위가 해야 할 업무인 27만 원을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거나, 또 지배적 1위사업자가 여차여차 하므로 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의 성격상 온당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저도 마지막에 부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30만원을 올리면 LGU+만 30만원 올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30만원 올리지 않습니까? LGU+ 돈 많습니까? 여기에서 봅시다. 문제는 30만원을 27만원에서 더 내려야 기본적으로 거품이 빠져야 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핸드폰 원가 거품은 계속 끼어 있고, 겨우 이제 거품이 조금씩 조금씩 제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보조금을 올려서 또 거품을 끼우고, 그래서 90만원에 사는 사람과 18만원에 사는 사람이 또 발생하고 디지털 격차 이상으로 핸드폰 구매격차가 엄청나게심하다는 것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자체가 이용자 차별이기 때문에 과징금이니 영업정지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형적인 국부 유출이고 R&D 비용 축소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보조금을 올려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안에 내포된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보조금 기준이 27만원이라는 선은 그 선 자체가 높다, 낮다의 의미보다는 그것을 항상어기고 있는 행태가 1년 365일 어디선가 일어난다는 점에 대해 가이드로서의 역할 측면에서도 그렇고 고객 입장에서도 고객의 차별성이라는 행위가 항상 일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바로바로 반박하겠습니다. 50만원이면 그것이 70만원, 80만원 안 뛰겠습니까? 왜냐하면 문제는 절대적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1명이라도 더 뺏어 오기 위해 상대방보다 좀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그래서 가입자 유치를 훨씬 더 용이하고 많이 하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맞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 이야기하고 싶겠지요. 2G 시절에 27만원이었는데 4G 시절에 27만원 가지고 계속 규제할 거야라고 묻는 것인데 문제는 절대적 기준의 문제가 아니고, 규칙의 불비의 문제가 아니고 통신 3사의 비이성적, 불합리한 보조금 경쟁이라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맞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원인을 정확하게 잡아야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진단을 엉터리로 하고 엉터리 처방을 하려고 합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그래서 보조금 가이드 선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조금 가이드가 실제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통신 3사가 또는 가장 바람직한모습은 현실적이고 적정한 순으로 가이드가 정해지고, 다만 어느 누구도 대부분의 판매 접점에서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박 상무님, 27만원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3만원 올리면 현실성이 충족됩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선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O 양문석 상임위원

-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계속해서 제가 잘못된 진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3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러면 원가는 200만원으로 또 가겠지요. 그리고 보조금은 170만원, 180만원 쓰겠지요. 마찬가지로 27만원에서 30만원 올리면 그 이상에서 또 경쟁하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 첫 번째 잘못 제기한 문제다, 두 번째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더 낮추어야 한다, 이것이 정말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하는 방안이고 그리고 그 낮춰진 가이드라인에서 위반했었을 때 또 명확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도사업자에서 마치 빠졌다, LGU+가 잘한 것 있습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없지 않습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리고 느닷없이 보조금 올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내리면 내렸어야지 그 것을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쨌든 그 부분은 오늘 논쟁할 부분이 아닙니다. LGU+ 역시 우리 실무자인 과장이나 국장으로부터 다음에 위반하면 주도사업자를 골라서 가중 처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지요?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리고 그 전에 신규모집 기간일 때도 위법한 것이지 않습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위법 투성인데 무엇을 잘했다고 제도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KT와 SKT의 경우에는 판매점이나 대리점 등 개인사업자들이 많다, 그런데 LGU+의 경우 대부분 본사에서 직영체제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 쉽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채널의 구성상 직영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위법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일사불 란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오히려 더 반대의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이라는 체제 자체는 컨트롤이 잘 되는 반면에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뭔가 조사나 위법에 대해 판단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는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조사나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의 약점으로 작용한 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LGU+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안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오늘 논쟁거리는 아니고, 기왕 나왔으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LGU+도 위반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겨우 어쩌다가 주도사업자에서 빠지긴 했지만 위반이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처벌이 나오더라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중처벌을 계속 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위법한 마케팅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이미 이용자정책국으로부터 앞으로는 거의 상시 조사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유가 됐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다시는 위반하지 않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조사결과에 보면 LGU+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내용과 현장조사와 불일치한 것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30.8%, 그것이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영체제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일단 조사 내용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받지를 못해서 실제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2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직영점보다 대리점에서 리베이트로 표현되는 정책을 받고 그 정책에 의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격을 각자 스스로 정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침은 고객과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가입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그 신청서가 전산에 스캔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과거의 관습상고객의 약속 자체를 일일이 다 적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해 나갈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에 대해 굉장히 분위기가 엄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대리점들이패널티나 이런 불이익을 무서워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기재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통계를 가지고 한 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다른 사업자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라는 것이 쉽사리 통제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깨끗하게 이용자 차별이 없도록 가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사업자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말씀들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이번 조사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다음번에 조사를 또 하면 어느 사업자라도 주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U+에서도 항상 그 점을 유념해 두시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

- 예.

○ 이경재 위원장

- 이번에는 주도사업자를 적발해서 강력하게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을 누차 발표한바 있고 또 실무자들로부터 통보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결과를 보면 오십보백보이고 종이 한 장차이입니다. 과연 이것을 주도사업자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의문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공약한 것이고 이것이 점점 더 정말 일벌백계하는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해서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LG유플러스 피심인 퇴장)

안건 보고와 피심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방안을 오남석 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사무국의 시정조치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통 3사의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는 저희 사업법 제52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5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특히 위반

주도사업자는 동법 제53조에 따른 30% 이내의 과징금 추가적 가중이 가능하고, 동법 제52 조에 따른 3개월 이내의 신규모집 금지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구체적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년 1월 8일~3월 13일 신규모집 금지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간 중에 주도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 기간 중에는 이 동통신사별로 기간을 달리해서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을 금지함에 따라 위반 주도사업자 선 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통 3사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기준 과징금에 필수적 가중을 거쳐 최종 과징금이 결정됩 니다. 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제재시 위반율이 48%, 49% 정도의 위반에 대해서 부과기준율을 1% 적용한바 있 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모집 금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위반율이 72%까지 현격 히 높아진 점을 고려해서 최대 2%까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반율이 각각 73.8%와 73.1%인 SKT와 KT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을 2%, 위반율이 66%인 LGU+에 대해서는 1.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기준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 다. 필수적 가중은 저희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재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3회 때부터 10%씩 가산토록 되어 있 습니다. 이것은 필수적 가중사항입니다. 이통 3사 모두 이번 행위가 다섯 째이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서 30%를 필수적으로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할 경우에 신규모집 금지기간에 대한 과징금은 SKT 337.4억원, KT 175.4억원, LGU+ 91.6억원 해서 총 604.4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금년 4월 22일~5월 7일 과열 기간에 대한 제재(안)입니다. 먼저 주도사업자는 지난 3월 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개의 주도적 사업자를 선정 하여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위원회는 이러한 정책방향 을 수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22일~5월 7일 과열기간에 대해 위반 주도사 업자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동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방통위가 그동안 논의를 통해 만 든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상정해서 그 벌점이 제일 많은 사업자를 주도사업자로 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U+ 52점, SKT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과징금은 기준 과징금에 필수적 가중과 또 거 기에 추가적 가중을 거쳐 최종 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과징금은 앞서 말 씀드렸듯이 금년 3월 제재시 위반율이 $48\sim49\%$ 정도였습니다. 그때 부과기준율은 1%를 적 용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위반율이 48.5%와 48.8%인 SKT과 LGU+는 부과기준율을 1%, 그다음에 위반율이 55.6%인 KT는 1.2%의 부과기준율을 부과해서 기준 과징금을 산정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필수적 가중은 앞서 기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통 3사 모두 이번 위반행위가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3회 때부터 10%해서 30%를 필수 가중하게 됩 니다. 추가적 가중은 위반 주도사업자인 KT에 대해서는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30%(6 억원)를 추가 가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산정할 경우에 과열기간에 대 한 과징금은 SKT 27.2억원, KT 27억원, LGU+ 11억원으로 총 65.2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신 규모집 금지는 위반 주도사업자로 선정된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별도로 신규모집 금지를 추가하되, 1개 사업자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조치가 처음인 점, 그다음에 과징금도 병과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규모집 금지기간을 7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건의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별지에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 별지에 보시다시피 시

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은 두 기간 합쳐서 SKT 364.6억원, KT 202.4억원, LGU+ 102.6억원 등 총 669.6억원이고, 신규모집 금지는 KT에 한하여 7일을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신규모집 금지기간에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지금 사무국이 책정한 과징금과 KT에 대한 영업정지 단독 7일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3개 사업자들의 진술에도 나오지만 이미 휴대폰 보급은 포화상태에 있고 LTE-A로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번호이동의 싸움으로 사업자들의 전쟁이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자 침해행위를 방치할 경우에 행정의 존재이유가 무너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도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7일의 단독 영업정지를 근거로 해서 차후 제2차의 위법 시장조사가 벌어지고 거기에 주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회사는 최소한 14일의 단독 영업정지로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 차별을 통한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 24일부터 주도적 사업자를 선별해서 일벌백 계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1월 18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오늘과 비슷 한데 속기록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상임위원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홍 성규 위원님께서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태가 사무국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분개를 하셨는 데 사무국을 우습게 보는 정도가 아니고 방통위를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가 또 돌지요. 그리고 사업자들은 되지도 않는 약속을 하고 가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위기가 이미 지난 1월에도 공히 있었다, 지난 3월 14일 김충식 부위원장님께서 '보조금 정의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당위적이다, 심지어 아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용자에게 주는.' 이렇게 보조금 을 정의하고, 주도사업자에 대해서 미세한 차이라도 주도사업자로 걸리면 처벌하자라고 이 야기를 김대희 상임위원이나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이나 당시 이계철 위원장이 미세한 차이라도 일단 걸리면 무조건 주도사업자로 징계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 업정지 기간에 대해 제가 세 번에 걸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 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1등과 2등에 차이가 나면 지체 없이 1등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이상 내려야 한다고 보고 또 걸리면 그다음은 20일, 30일 이렇게 계속해서 가 주어야 한다 고 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이나 홍성규 상임위원도 동의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최소 영업정지 10일 이상이라는 부분을 못을 박 는 이유는 이제는 마케팅 비용을 좀 더 써서 벌금 내는 것보다 좀 더 써서 당겨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시장의 오만한 인식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그 당시에 첫 주도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정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7일이 올라왔지요? KT 사장이 상임위원이 경고하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신도 안 하고

개무시를 하는데 사무국도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미 지난 3월 14일 영업정지 10일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박았지요? 그리고 동의했지요? 왜 영업정지 7일입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한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쭉 이야기되고 있습니 다만 주도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자는 것은 여러 차례 이야기되었 고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고민이 되지요. 왜냐 하면 강한 처벌을 하면 속은 시원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그런 행정행위가 과연 옳냐, 또 어떤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충식 부위원장, 양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난번에 신규모집 금지기간 때를 한 번 봅시다. 그때 오히려 위반율이 현저하게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예상 했었느냐,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주도사업자를 골라서 어떤 사업자에게 예를 들어 우리가 강한 처 벌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강하게 처벌이 갔을 때 또 다른 역효과는 없을까, 이 런 것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흘이냐, 일주일이냐 가 지고 고민도 했는데, 그래서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무국에서 올린 이야기가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정지기간을 처음 해 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엄 청난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 5일에서 열흘까지 그 정도 선 에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일은 아주 적고, 10일은 아주 강한 것 아닐까, 그래서 그 중간지점인 7일 정도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도사업자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그 정신에는 동의합니다. 이 행정 행위를 아주 강하게 갔을 때 오는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이니까 한 7일 정도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O 양문석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1월 18일에 김대희 상임위원 말씀을 옮겨드렸는데 사무국을 우습게 보고 방통 위를 우습게 보는 행위가 지속적인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 다섯 번째 징계입니다. 그리고 최근 7, 8개월 동안 세 번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과 홍성규 위원이 주도자와 아닌 사업자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위반 주도사업자 벌점 3점입니다. 총 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 위반율, 위반율이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 보조금, 위반 평균 보조금, 자료불일치 정도, 이 6개 중 KT가 5개 만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총점이 97점입니다. LGU+는 52점입니다. SKT 32점입니다. 무슨 종이 한장이 이렇게 두껍습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종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이유가.. 더블스코어가 나는데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0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 있어서 KT 사장이 전화 안 받았다고 10일이라고 우긴다, 또 그렇게 KT는 이야기할 텐데 이미 3월 24일 조사도 들어가기 전이었고 조사계획도 없던 시절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주도사업자 잡히면 영업정지 10일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이의 달지 않고 동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7일이지요? 도대체 사무국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야당 추천이라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김대희 상임위원

- 답변보다도 저도 발언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양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난번 회의록도 그렇고 저도 회의록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차례 세 번에 걸쳐 보조금은 없애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방통위를 무시하는 이런 사업자들의 행위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념해서 본 것은 특히 법에는 과징금의 범위를 '취득한 이익의 3%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획기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관철되어서 이번에 2%까지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을 저는 굉장히 진전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업자들에게도 좀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양 위원님 경고 말씀하시고 KT 답변이 없었다는 말씀도 하십니다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실무자들과도 매번 일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경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무시하는 상황까지 나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고심해서 사무국에서 만들어낸 안이 저는의미가 있다고 보고, 처음 하는 단독 영업정지이기 때문에 7일 선에서 한 번 해 보는 것이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이 이동통신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의사결정 단위 세 사람에게 전화를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은 들었고 한 사람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 리콜도 안 하고 받지도 않고 문자 답장도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태도, 아니면 또는 양문석 배제하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면 된다는 태도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이미 영업정지 10일이라는 부분에 대해 3월에 말씀드렸습니다. KT를 겨냥한 영업정지 10일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이미 속기록에 '최소 영업정지 10일 이상을 못 박는 이유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케팅 담당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그것도 두 차례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왜 수용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기본적인 제재에 있어서 기본적인 성격을 동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자면 주도 사업자를 제일 먼저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일 먼저 한 것이 저입니다. 제가 주장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10일이라는 것이 그때 한 번 이야기한 것이 빼도 박도 못할 것이라면 이런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는 그 10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강한 처벌을 하자는 정신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10일로 하기로 했으니까 7일은 안 된다, 11일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지요. 회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그렇게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본다면 그 정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제기관에서 하는 행정처벌에 우리 나름대로도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냐, 어쩌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가 어떤 효과, 어떤 역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그런 성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은 이해하니까 그 정도에서 과한 말씀을 삼가 했으면 합니다.

O 양문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주 단위로 끊는 것과 초순, 중순, 하순 순 단위로 끊는 것에 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단위보다 순 단위로 끊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우리가 수없이 엄벌, 강력한 제재, 아까 위원장님 사회 보시면서도 강력한 일벌백계를 이야 기하셨는데, 강력한 일벌백계가 한쪽은 순 단위로 끊어서 한 번 가 보자고 이미 3월에 이야 기했고, 지금 와서 주 단위로 끊자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도대체 이것을 상임위원 한 사람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주 단위에서 순 단위로 못 받아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라는 부분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 김충식 부위원장

- 양 위원 말씀 잘 들었고, 기본적으로 영업정지 일수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내가 통신 3사가 아닌 제3의 알뜰폰사업자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하루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손실금 추산을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 경우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대략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1위 사업자는 1일 매출 타격을 한 200억원 정도 볼 수 있을 것이고, 2위라면 80~90억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내리는 단독 영업 정지이고 또 방통위 역사상 처음 해 보는 이러한 시도입니다. 또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은 해야 한다고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사무국과 나름대로 소통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일주일로 하더라도, 양 위원 생각보다 미흡하더라도, 단독 영업정지에 대한 의미가 희석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제가 의견드린 대로 차후에는 2주일, 그 후에는 21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두고서 최초의 제재로서는 일주일이 적정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수치는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매출감소는 KT로 치면 111억원 정도 됩니다. 계산이 하루 평균 들어오는 숫자 한 1만 몇 천명, 곱하기 ARPU 곱하기 그다음에 한 가입자가 평균 가지고 있는 홀딩 연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매출감소는 한 110억원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으로 따져 보면 7일이 크냐라고 이야기할 때 갑갑합니다. 영업이익률 KT 5.8%의 실질적으로 하루 영업이 신규모집 정지됐을 때 실질적인 감소액은 5.4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제 계산입니다. 담당 과장, 하루 영업정지 당했을 때 영업이익률 계산해서 KT 영업이익 어느 정도 감소합니까?

○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

- 사업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KT는 작년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 추정해 보니 약 10.1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5억원이나 10억원이나, 그러면 사실상 7일 중에 5일만 영업정지인데 주말 빼고 전산이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가지고 계산하면 10억원이라고 해 봐야 50억원도 안됩니다.

○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

- 경제적인 손실도 생각해야 하고, 또한 브랜드의 손실, 실질적인 가입자의 손실을 같이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갑자기 KT 브랜드 이야기하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만큼 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 정도 하시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막고 시간을 정화하자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주일하고 이다음에는 14일, 적어도 배 이상 정도의 느낌이 가도록 업자들에게 이 분위기가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업자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해서 다시는 이런 시장과열에 따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제의에 동의하는바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문석 위원께서 제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는데 그 대상은 LGU+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십보백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오십보백보 종이 한 장, 그러니까 종이 한 장으로 만 자꾸 계산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LGU+가 지금 주도사업자가 안 돼서 기분 좋은 뜻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똑같은 범법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일로 못 박았다는 것은, 취임하기 전에 나온 이야기인지 몰라도 위원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와 양문석 위원을 제외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제의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그것을 다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오남석 국장, 시정조치 방안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방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합의하신 시정조치방안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 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통 3사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으로는 앞서 별지를 통해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시 중지, 그다음에 시정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이행계획의 제출 및 이행결과 보고를 명령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울러 과징금은 SKT 364.6억원, KT 202.4억원, LGU+ 102.6억원 등 총 669.6억원을부과토록 합의했고, 또한 신규모집 금지는 KT에 한하여 7일을 부과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방금 정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8.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 김충식 부위원장

- 한 마디만 부연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단독 영업정지는 차회에 다시 시장 조사가 벌어지고 주도사업자가 적발이 된다면 2주일 단독 영업정지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마케팅 3사 사업자들이 주지하고, 충분하게 손익을 계산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논의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회의 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2시 10분 폐회 】